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11월 1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1월 28일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방 성 봉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개정 :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 반영(안 제7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10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중 우

○ 본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